

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50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2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에코랜드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이를 관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위탁시설 : 평창에코랜드(Pyeongchang Eco Land)
- 위탁자 : 평창군
- 수탁자 : 평창군시설관리공단
- 위탁기간 : 2026. 7. ~ 계속

나. 관련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 및 제71조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
-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 및 제20조

다. 위탁시설 현황

- 시설명 : 평창에코랜드 *도로명 : 바위공원길 99
- 위치 : 평창읍 중리 11번지 외 8필지, 자연녹지지역
- 부지면적 : 15,190㎡ *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 : 13,758㎡
- 건물규모 : 지상2층, 연면적 754㎡
- 편입토지 상세내용

지번	지목	편입면적	용도	비고
9필지		15,190㎡		군유지 (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 편입)
10-3	전	54㎡	조경	
11	답	5,296㎡	주차장, 돌기둥, 미로분수, 석부작, 조경	
11-1	답	4,259㎡	건물, 돌기둥, 인공암벽, 조경	
11-8	답	327㎡	보도, 조경, 인공암벽	
13-3	전	3,452㎡	인공암벽, 미로분수, 지하수, 석부작, 돌기둥, 조경	
13-5	전	165㎡	인공암벽, 석부작, 조경	
15-7	답	205㎡	조경, 보도	
358	구거	45㎡	조경	국유지 (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 제외)
358-9	구거	1,387㎡	조경, 주차장	

○ 건물 및 부대시설 상세내용

구분	품목, 구조	규모, 면적	용도, 기능
건물	철근 콘크리트 구조	지상 2층 1동, 부속건물 1동 건축면적 481.48㎡, 연면적 754.00㎡ [1층 426.12㎡, 2층 327.88㎡, 계단탑 55.77㎡, 부속동(외부 장애인용 승강기) 16.24㎡] * 계단탑, 장애인용승강기는 바닥면적 산입 제외	제2종 근린생활시설 (휴게음식점 - 카페 166석) 건물외벽 대형전광판 (7.7m×3.8m, 관광홍보영상)
부대 시설	주차장	건축물부설주차장 공동설치 총 79면 - 에코랜드 74면(장애인용 3면 포함) - 물환경체험센터 5면	상부 태양광집열판 96kW
	광장	원형광장 2,800㎡ (지름 약 60m)	열린 광장
	미로분수	물놀이형 수경시설 / 하향식 분수(수막 미로) 25m×25m (높이 6.2m)	상부 분수 구조물 하부 저수조(100톤)
	인공암벽	주상절리형상 암벽 63.5m (높이 6m) 및 경관조명	상부 인공폭포(3개) 하부 담수조(110톤)
	석부작	43점 (높이 2m~4m)	상부 관수시설

구분	품목, 구조	규모, 면적	용도, 기능
부대 시설	지하수	양수능력 45m ³ /일, 음용수	미로분수, 인공폭포 급수 및 석부작 관수
	돌기둥	18주 (높이 5m)	주 연결 통로 기둥마다 조명 1점
	파고라	10.7m (높이 3.4m)	유리원석 활용 조명 연출
	가로등	21주	
	기타시설	조경, 산책로, 조명시설, CCTV, 전기시설 등	

라. 운영 현황

- 운영인력 : 3명(공무직 3) *일반행정인력 제외
- 에코힐카페 매출액
 - 카페오픈 : 2025. 7. 22.
 - 2025년 월별 매출액

(단위 : 천원)

월별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매출액	3,289	11,773	7,817	13,769	6,881	5,869

- 월평균 매출액 : 9,222천원 *7월분 제외

⇒ 연간 매출액 추정 : 110,664천원 *9,222천원×12월

마. 연간 운영예산 추정

- 연간 운영예산 : 인건비 포함 197,591천원 소요

(단위 : 천원)

계	197,591	산출내역
인건비	114,011	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: 카페운영 단순노무원 3명
사무관리비	33,180	무인경비·전기·소방·승강기·미로분수청소·방역소독 용역, 에코힐카페 운영 소모품, 사무용 비품 화장실 소모품 등
공공운영비	26,400	공과금(전기, 상하수도, 통신비 등)
시설장비유지비	6,000	시설장비 수리·유지비
재료비	18,000	원두·차 등 재료비

- * 인건비 : 2025년 에코힐카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참조(5% 증액)
<일반관리 및 시설관리 인력을 제외한 단순노무 인건비>
- * 기타 운영비 : 2026년 당초예산 기준

바.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

- 평창에코랜드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,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이를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는 것으로
-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단으로서 평창군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해 오고 있는 전문기관이므로
- 평창에코랜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효율적 운영과 자율적 수익구조 창출 등을 위해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시설관리 공단에 관리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사. 기대효과

- 평창에코랜드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요 공공시설로서, 전문기관에의 관리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범위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.
 1.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,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 4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

-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□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(대상사무)

-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 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-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 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 4. 공원·녹지시설

□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(사업)

-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

□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0조(대행사업의 수행)

-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.